

스위스商標制度解説



金 永 吉
〈特許廳 審査官〉

1. 商標制度의 概要

스위스商標法은 「製造標 및 商標法의 保護」, 「原產地表示의 保護」 및 「工業表彰의 保護」라고 하는 3가지 部門으로 構成되고 있다.

또한 스위스상표법은 우리나라 및 先進國商標法과 같이 詳細한 規定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運用上 不明한 點이 많은것이 特徵이다.

(1) 스위스에서는 商號는 상표로 보지않으며 상호를 商標登錄原簿에 登錄하는 것이 아니라 商標登記簿에 登記하여 法律上 保護를 받게 된다.

(2) 상표를 가장 먼저 寄託한 者는 反證이 있기까지는 眞正한 權利者로 推定하게 되며 何時라도 반증이 있으면 商標權은 取消될수가 있어서 기탁은 一種의 證據(Prima face evidence)라고 할수가 있으므로 스위스 상표법은 先使用主義를 採用하고 있다고 볼수가 있다. 다만 未登錄商標는 裁判上의 保護를 받을수가 없다.

(3) 그리고 同一한 상표에 관하여 2重登錄을 認定하고 있는바 즉 동일 또는 類似한 商標이나 生産物에 대하여 親子關係등 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生産者들은 同一商標의 기탁이 認定되고 있다.

(4) 外國人으로서 상표를 기탁하려는 자는 첫째 스위스에 互惠의 待遇를 해주는 國家에 事務所를 갖인 製造業者, 生産者 또는 去來業者로서 그 상표가 그 나라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要旨의 證明書를 提出해야 한다.

둘째는 스위스에 互惠의 대우를 해주는 나라의 行政機關으로서 生産 또는 去來業務를 行하되 그 나라가 스위스에 互惠待遇를 해주고 있다는 要旨의 證明書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표가 스위스法律에 適合하게 기탁되어 있을 때에는 外國의 寄託者는 그 상표가 그 나라에서 保護되고 있다는 要旨의 證明書(本國登錄證明書)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外國權利者의 상표는 本國등록證明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原出願國의 등록상표와 相異하더라도 그 상이한 點이 重要한 部分이 아니고 또한 全體의 印象이나 要部의 變化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수가 있다.

(6) 상표에 유사의 言語로서 同一內容을 記述하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의 언어를 기탁하기만 하면 다른 언어는 기탁하지 않더라도 保護받을수가 있는데 이것은 스위스에 있어서는 地域에 따라 獨語, 佛語, 伊太利語의 어느 언어던 通用되고 있음을 勘案하여 상표의 기탁에 適用시키고 있다.

(7) 스위스에서는 團體標章制度를 採用하고 있으며 外國에서 私法이나 公法의 規定에 따라 設定된 團體의 團體標章은 本國에 등록되어 있고 스위스와 互惠關係에 있으면 기탁할수가 있다.

(8) 상표의 保護期間은 상표를 기탁한 날로부터 20年이며 同期間에 繼續하여 更新할수가 있는데 經신은 보호기간중 언제나 또는 期間經過後 6個月까지 申請할 수가 있다.

(9) 商標寄託의 簡次로서

- ① 생산물 또는 상품을 지정한 商標登錄申請書
- ② 상표 또는 그 正確한 複製
- ③ 登錄料 40스위스프랑 등이다.

(10) 抹消된 상표는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第3者는 이것을 동일한 생산물 또는 상품에 대하여 기탁할수가 없다.

(11) 상표의 移轉은 營業과 함께만이 可能하고 自由讓渡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營業의 一部와 함께 이전하는 것은 許容된다.

이전은 移轉登錄公告가 있을후가 아니면 제3자에 對抗할수가 없다.

또한 營業이 여러國家에 걸쳐있을때의 이전은 스위스에 關聯된 部分만이 可能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12) 스위스에서는 商標出願公告 및 異議申請制度는 없고 登錄後 無料로 公고된다.

2. 商標制度의 運用

가. 商標의 不登錄事由

국가 또는 스위스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고 있는 公的인 紋章이나 其他 記號를 個人的 商標에 표시한 것은 등록될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법률의 보호조차 받을수가 없다. 또한 公有財産으로 보는 기호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善良한 風俗에 反하는 기호를 商標에 표시한것도 등록될 수가 없다.

나. 商標의 寄託

다음에 揭記한 자는 商標를 기탁할수가 있다.

(1) 製造業者 또는 生産者로서 그 事業所를 스위스國內에 가지고 있거나 또는 去來業者로서 스위스국내에 合法으로 設立된 營業所가 있는것.

(2) 스위스에 호혜대우를 주는 국가에 事業所를 갖고있는 제조업자, 생산자 및 거래자로서 그 商標가 그 나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요지의 證明서를 제출한것.

다. 商標使用 및 讓渡

商標權者가 繼續하여 3年間 商標를 使用하지 않았을 경우, 商標權者의 商標불사용에 대한 正當한 理由로서 疎明하지 못하게 되면 利害關係人의 訴에 의하여 法院은 商標權取消을 命하게 된다.

그리하여 登錄原簿에서 말소된 商標는 그 抹消日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 의하여 동일

한 生産物 또는 商品에 有效하게 기탁할수가 없다.

또한 營業과 관계되는 生産物 또는 商品을 識別하기 위해 사용되는 商標는 그 營業과 함께만이 讓渡할수가 있고 營業이 여러나라에 걸쳐있을때는 讓受人에 의하여 商標의 사용이 公衆을 欺瞞하지 않는限 營業의 스위스에 관한 부분의 양도로서 充分하다.

라. 登錄申請 및 拒絕

商標를 등록하려면 聯邦特許廳에 다음에 제기된것을 添付하여 기탁하여야한다.

(1) 商標를 사용하려는 生産物 및 商品을 지정한 商標登錄申請書

(2) 商標 또는 그 精確한 복제

(3) 등록료(지정상품의 範圍에 따라 追加料金包含) 한편 申방특허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商標등록을 拒絕한다.

(1) 登錄申請書類의 未備, 國內에 營業所不在 또는 商標가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요지의 證明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때

(2) 商標의 요부에 記章이 포함되어 있거나 美風良俗에 違反되었을때

(3) 數人이 同時에 同一商標의 등록을 신청했을경우 신청인의 한사람이 他申請人의 拋棄承認書 또는 법원의 最終判決을 提示하지 않았을때

(4) 商標가 分明한 虛構出所表示, 虛偽, 模倣 또는 偽造商號로 되어있을 때등이다.

마. 侵害 및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자는 商標權의 侵害로 보고 2,000프랑以下의 罰金 또는 1年以下의 禁錮에 處하며 再犯者는 2倍의 刑에 科한다.

(1) 타인의 商標를 위조 또는 公衆을 欺瞞할 程度로 모방한 者

(2) 타인의 商標를 自己의 生産物 또는 商品에 違法으로 사용한 者.

(3) 위조, 모방 또는 위법으로 사용된 商標를 불인 生産物 또는 商品인줄 알면서 販賣, 去來 또는 擴布한 者.

(4) 침해인줄 알면서 協力, 援助 또는 實行을 도운 者

(5) 위조, 모방 또는 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商標를 불인 自己의 生産物 또는 商品의 原產地를 밝히는 것을 拒否한 者등이다.

不足한 賦存資源을 技術人力開發로 克服하자!